

아틀리에 933'
다자녀 특별공급 서류안내

□ 구비서류 Check

구분	해당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Check
필수 서류	무주택서약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- 건본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	<input type="checkbox"/>
	배점 기준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	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출입국사실증명원	- 발급기간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발급(생년월일~2023.11.24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(기타지역 거주자로 정약)	<input type="checkbox"/>
	단신부임 입증서류	-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있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인감증명서 / 인감도장	-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/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- 주민등록상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-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(배우자) 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(자녀)	<input type="checkbox"/>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-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본인) - 만 18세 이상 ~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자녀)	<input type="checkbox"/>
	한부모가족증명서	-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이외 불가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- 건본주택 비치, 임신의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해당자만 ✓체크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- 입양의 경우,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	
대리인 신청시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청약 신청자), ※ 본인 발급용	<input type="checkbox"/>
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해당자만 ✓체크	대리인 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'23.11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 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